

自殺 관련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문제점

삼성생명(주) 박진석 변호사, 삼성전자(주) 강윤희 변호사

Problems On The Suicide Related Life Insurance Standard Clauses

Park Jinseok

Samsung Life Insurance Company, Legal Department

Kang Yoonhee

Samsung Eletronics Company, Legal Department

I. 序論

상법 제659조 및 제732조의2⁽¹⁾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만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이 면책된다. 또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는 고의 자살인 경우라도 '①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②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도록 면책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1)중과실에 의한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경우와 달리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중과실 자살도 면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면책예외사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규정의 문제점, (3)면책예외사유인 '면책기간 2년 경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이하 검토하였다.

II. 重過失 자살 면책 필요성 여부 (상법 제732조의2 개정 문제)

1. 개요

중과실에 의한 자살이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자살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자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732조의2에서는 특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만을 면책 사유로 삼음으로써 **유족 등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8.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2. 비교법적 고찰

각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면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강행법규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법률신문 제1730호, 상법 제659조 제2항의 문제점, 경수근).

영미법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면책여부를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되 자발적인 위험에의 노출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정하는 약관조항이 일반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²⁾. 그 문례로는 'voluntary exposure to unnecessary danger', 'voluntary exposure to obvious risk of injury'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① 피보험자가 심각한 위험을 인식할 것 ②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것 ③ 타인 구조 목적 등의 정당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접수 : 2008년 10월 1일 게재승인 : 2009년 1월 5일
교신저자 : 박진석, 강윤희

(1)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동법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검토

① 피보험자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보험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나고, ② 고의에 의한 자살 여부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중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경계는 항상 애매하여 위 사실의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③ 중과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우연성을 파괴하고 보험계약의 부도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고의로 인한 자살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바, 위 조항을 폐지하여 면책 여부를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I. '精神疾患 등으로 자유로운 意思決定을 할 수 없는 상태' 라는 약관규정의 문제점

1. 약관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는 고의 자살인 경우라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도록 면책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례의 경향

가. 개요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은 위 규정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의미하고, 이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면책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한) 경우'란 자살자가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의 징후와 준비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의 정신질환 상태에는 외인성(외인성), 내인성(내인성) 외에도 심인성(심인성)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8.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보면,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정신분열증성 정신병 및 정신병적우울증으로 진단, 투약받은 피보험자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행위에 나아간 사안(서울고등법원 2007.11.27. 선고 2007나14508)은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로 보았으나, 우울증 의증, 조울증 의증으로 입원치료한 적이 있는 피보험자가 심신허약 및 경제적인 곤란, 채권자들로 부터의 독촉, 자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단순 우울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07.8.14. 선고 2006나82894 판결)에서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로 보지 않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3. 문제점

서울고등법원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을 보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위 약관규정은 마치 정신질환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정도나 상태가 어떠한(심지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정신질환의 정도 등 좀 더 자세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위 약관 규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쟁송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불명확한 약관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약관작성자인 피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 검토

위 판결의 지적대로 위 표준약관의 규정은 정도를 불문하고 정신질환이 있기만 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2). 약관상 'death while under influence of liquor'를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동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안은 LITTLE v. IOWA STATE TRAVELING MEN'S ASS'N, 154 Iowa 440, 134 N.W. 1087. 약관상 'voluntary exposure to unnecessary danger'를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한 재해보험계약기간 중 선로공사구간에서 기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당해 위험이 상당하고(great), 피보험자는 그 위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knowing their existence), 자발적으로(voluntarily) 불필요하게(unnecessarily)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한 사안은 GLASS v. MASONS' FRATERNAL ACC. ASS'N OF AMERICA, 112 F. 495.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자살은 자살자 본인의 내외적 비정상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초래되는 병적 현상인데 결국 이와 같이 해석하면,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는 모든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위 표준약관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예를 들면 '중증 정신분열증이나 중증 우울증, 중증 조울증 등 중대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개정한다면 위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免責其間 2년의 연장 필요성 검토

1. 개요

위 면책예외사유에서는 보험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설사 피보험자가 명백히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준시를 2년으로 정하고 2년 경과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05.8.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참조).

2. 문제점

이는 보험가입 전 보험금 수령 목적을 형성한 경우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보험가입 후 보험금 수령의 고의가 새로이 형성되어 자살한 경우에 대하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면책기간은 단지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인지를 추인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편의상 규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법의 본질과 보험정책상 필요하다면 이를 언제든지 합목적적으로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위 면책예외사유는 면책기간 이후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3. 통계 및 비교법적 고찰

자살과 관련한 국내 통계를 보면, 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상위국가이고(2007년 자살률 1위⁽³⁾), 2005년 자살률 1위, **최근 20년간 자살증가율 1위**⁽⁴⁾), ② 2008년 1월 7일 보험학회지 최근호에 따르면 2005년 생명보험 가입 2년차 이후 계약자의 자살률(자살자/사망자)은 5.56%로 생명보험 미가입자 자살률(4.74%)과 우리 국민 전체 자살률(4.91%)보다 크게 높고, ③ 2000년 4.19%이던 생명보험 가입자의 면책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3년 4.69% 2004년 5.10%로 점차 늘고 있으며⁽⁵⁾, ④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의 연구보고서⁽⁶⁾에 의하면 생명보험 가입자 중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⑤ 12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추이를 보면, 2005년에 3645건 658억을 지급하였던 것이 2006년에 3728건 638억으로 주춤하였다가 2007년에 4253건에 805억을 지급하여 대폭 증가하였다⁽⁷⁾.

주요국의 면책기간을 살펴보면, 영미권은 1~2년⁽⁸⁾이나, 독일은 3년(독일표준생명보험약관(ALB) 8조⁽⁹⁾), 스위스는 3년, 프랑스는 2004년 3년으로 연장⁽¹⁰⁾했으며, 일본도 2000년 2년으로 연장하였다가 2004년 이후 3년으로 연장⁽¹¹⁾했다.

일본에서는 1999년 1월 27일의 오카야마 지방법원의 판결과 1999년 2월 9일 야마구치 지방법원의 판결 등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킬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자살하였고 자살 목적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는 상법의 자살면책규정이 적용된다."며 면책기간 경과 후에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판례⁽¹²⁾가 다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검토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위 주요국에서 언급된 나라들의 자살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일본과 프랑스, 그 외 각국의 일부 생보사들은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이며, 면책기간의 연장이 자살억제의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면책기간의 연장은 제도의 개선에 따른 사회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방안이라는 점에서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2008 Factbook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4). 국민일보 2007.6.5.자

(5). 이경룡, 김사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8집 53면

(6). 김석영, 김형진, '기대수명증가 · 사망원인변동의 현황과 시사점' WII 제109호

(7). 퓨너럴뉴스 2008.4.4.자 '자살보험금 한해 수백억' <http://www.funeralnews.co.kr/news/article.html?no=2927>

(8). 이경룡, 김사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8집 제39면

V. 結論

상법 제732조의2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적인 외국 입법례와는 다르게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크다.

참고문헌

1. 경수근, 상법 제659조 제2항의 문제점, 법률신문 제1730호
2. 이경룡, 김사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8집
3.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집
4.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 자살 - 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제69집

(9).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집 제36면

(10). 퓨너럴뉴스 2008.4.4.자 '자살보험금 한해 수백억' <http://www.funeralnews.co.kr/news/article.html?no=2927>

(11). 毎.日新聞, 2005.10.26. 일본 대형생보사의 자살면책기간은 1999년경까지 공통적으로 1년이었으나 2000년을 전후로 내국사들은 2년, America Family 등 외국사들은 3년으로 연장했었음. 2004년 이후 日本생명, 明治安田생명 등에 이어 10월 第一생명도 3년으로 연장하면서 생보사들의 면책기간이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 생명보험협회 발행 '해외보험금융동향' 제204호 참조.

(12). 岡山地裁 1999.1.27. 判決, 山口地裁 1999.2.9. 判決, 東京高裁 2001.1.31. 判決